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2일

군 산 시 정

군산시 조례 제2116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8호 및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 (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1. 정당현수막은 시민의 통행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정당현수막은 혐오ㆍ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법 제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했 개 정 혅 아 제3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신 설> 등) 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 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 조제8호 및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이하 "정당현수 막"이라 한다)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 라야 한다. 1. 정당현수막은 시민의 통행 안 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 하여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정당현수막은 혐오 · 비방의 내 용이 없어야 한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 의 특례) ① ---- 법 제3조 ----의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제3조 및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 화발전특구(이하"특구"라 한다)

| 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 | 1 |
|--------------------|---|
|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 특 |
| 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 | 설 |
| 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 | 제 |
| 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 | 시 |
| 할 수 있다. | |

② (생 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